

2023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 대상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감사분야 : 행정시책, 예산집행 및 회계분야, 공사·물품·용역 계약 등 일반행정 전 분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등
- 감사기간 : 2023. 9. 11. ~ 2023. 9. 15.<5일간>
- 감사범위 : 2020. 9. 1. ~ 2023. 8. 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4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신분상 조치(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계	훈계	주의	계	시정	주의	소계	회 수	추징	기타	
8	4	4	15	3	12	300	300	-	-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에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에서는 <표1>과 같이 2022년 ○○월 ○○일부터 ○○일까지 ○명의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 ○○,○○○원을 2022년 예산이 아닌 2023년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1] <회계연도 위반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현황>

성명	근무내역	근무일자	근무일수	지급단가(원)	지급금액(원)
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업무활동장려금 부당 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6.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월 기준액(9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순회진료, 대직진료 등),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는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한 일자에 대해서만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에서는 <표2>과 같이 휴일 관사에서 비상콜 대기한다는 명분으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일 ◎,◎◎◎천원의 업무활동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2] <업무활동장려금 부적정 지급 현황>

성명	근무내역	근무일자		근무일수	지급금액(원)	비고
		2021년	2022년			
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 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조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4대 보험(기관부담금)·퇴직금 등을 포함하고, 해당 인력의 임금 수준은 채용기관의 규정에 따라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에서는 <표>와 같이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임의로 ○회 ○,○○○천원을 지급하였다.

[표] <명절휴가비 부당 지급 현황>

지급일자	적요	지급처	지급액(천원)	비고
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2022년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에서는 한센병 관리사업을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복지협회 ○○경남지부에 위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복지협회 ○○경남지부는 위탁금 교부신청시 한센병 홍보, 이동진료, 재활사업, 연구사업 및 진료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한국○○복지협회 ○○경남지부가 2022년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을 집행함에 있어 <표>와 같이 한센병 관리·홍보와 상관없는 ○○진료소 원장 송별회로 ③③③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한센병 관리사업 부적정 집행 현황>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비고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부당하게 집행한 ○○○,○○○원은 회수하시고, 앞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건강증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 지급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계도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위하여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르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고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는 1일당 5시간 이상 근무한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평일 주간은 4만원을, 야간·새벽·휴일은 6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건강증진과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6:00 ~ 21:00 근무한 금연지도원 ○명에 대하여 16:00 ~ 18:00는 야간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으로 간주하여 1일당 6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일 ◎◎,◎◎◎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금연지도원 야간 활동보상금 부적정 지급 현황>

성명	야간 근무일수			활동보상금 지급액 (천원)
	계	2021년	2022년	
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건강증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건강증진과에서는 ○○○○○○전문병원에 <표1>과 같이 2021년 ~ 2022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보조금 지급 현황>

보조사업자	연도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일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군비	
○○○○○○○전문병원	2021	2021. 3. 3.	80,000	40,000	40,000	
	2022	2022. 4. 12.	100,000	50,000	5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나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병원은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표2>와 같이 ○○○○○○전문병원이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비, ○○비, ○○료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부담이 아닌 보조금으로 보전하였음에도 건강증진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2]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 집행한 사업비 현황>

연도	집행내용	집행액(원)	연도	집행내용	집행액(원)
계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업무에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 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2021년 친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보건 행정과에서는 (사)○○○○○○○○○ 경상남도지회 남해군지부에 <표>와 같이 2021년 친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2021년 친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사)○○○○○○○○○ 경상남도지회 남해군지부	2021년 3월 ~ 12월	11,000	10,000	1,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출증빙자료 미첨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사)○○○○○○○○○ 경상남도지회 남해군지부에서 2021. ○○. ○. 투명마스크 ○○○매를 구매하면서 거래명세서만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보건 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3. 현금성 경비 부당 지원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공익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기부금, 시상금, 격려금(상품권 등)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편성·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에서는 (사)○○○○○○○○ 경상남도지회 남해군지부가 보조금 교부 신청하면서 친절향상 및 경기 활성화 이벤트를 위해 남해화폐화전 및 모바일 화전 ①,②③④천원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대로 교부결정 하였으며, (사)○○○○○○○○ 경상남도지회 남해군지부가 남해화폐화전 5천원권 ①②③매, 1만원권 ④⑤매를 구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업무에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건강증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의료기관 면허증서 교부처리 소홀

1. 업무개요(현황)

건강증진과에서는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38조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발급하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건강증진과에서는 <표>와 같이 2021. 00. 00. ‘00한의원’ 개설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남해군 재무과에 등록면허세 부과자료 통보는 하였으나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면허증서를 교부하였다.

[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부적정 처리 현황>

의료기관				개설자	비고
명칭	종류	소재지	개설신고일자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면허증서 교부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행사 및 시책·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는 <표>와 같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황>

지출일자	지출통계목	집행내용	지급대상	금액(원)	지적사항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과목해소 부적정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부서 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사무용 잡품비,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등
- '공공운영비'는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과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 '감리비'는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문화재 수리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 취득비나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구입비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는 <표>와 같이 예산 통계목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집행하였다.

[표]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현황>

지급일자	적요	금액(원)	지출 통계목	적정 통계목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 소홀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서는 <표>와 같이 2020년 ○월 이후 몇 차례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서면(내부결재)을 통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

[표] <신용카드 발급대장 기재내역>

발급일자	금융기관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지적사항
	기관명	계좌번호			

발급일자	금융기관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지적사항
	기관명	계좌번호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건진료소 근태복무 관리 소홀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15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명시한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근무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2022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5개 보건진료소의 무인경비시스템의 평일 오전 해제시간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기간제근로자가 총 ○○회에 걸쳐 근무시간 9시를 넘어서 출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보건진료소 출근시간 위반현황>

구분	오전 9시 이후 무인경비시스템 해제현황			비고
	계	2022년	2023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직원 근태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건진료소 의약품 관리 소홀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15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 환자를 진료한 후 약을 처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남해군보건소처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진료실에 이송된 환자는 환자 명부를 등재하고 병상일지에 의하여 진단 처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소비약품은 처방부에 따라 매일 집계하여약품수불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장은 진료실을 방문한 환자를 진단 처치한 후 소비약품에 대해서는 매일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소는 <표>와 같이 감사일 기준 의약품 수불대장과 보관중인 약품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약품 수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약품 수량 불일치 현황>

구분	약품명	약품 수량			비고
		대장상수량	실수량	차이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남해군보건소처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품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소홀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에서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에서는 <표>와 같이 ‘공공보건기관 ○○○○ 정비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표] <산업안전보건비 미계상 공사 현황>

연도	사업명	공사예정금액(천원)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시공사
		계	도금액	관금액				
2020								
2020								
2021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처리 소홀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에서는 공사감독관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확인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에서는 <표>와 같이 ‘공공건축물 ○○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옥상의 물탱크 밑바닥에는 우레탄 방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감액조치 없이 공사비 〇〇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공사비 과다지급 현황>

사업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천원)	시공자		과다 지급	
					업체명	대표	사유	금액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다 집행액 〇〇,〇〇〇원은 회수하시고,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처분서

[기관·부서명] 보건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착공계 검토 소홀

1. 업무개요(현황)

보건행정과에서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신축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설계 및 발주, 계약,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공사규모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행정과는 '남해군 보건소 ○○ 개보수 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착공 시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승인 통보하여야 하고 품질시험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승인 여부도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 ○○○○○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접시공계획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착공계 검토 소홀 현황>

구분	연도	사업명	공사예정금액(천원)			계약일	시공사
			계	도급	관급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